



부산대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변경사항 알림

1. 관련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절(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 '21. 2. 10. 공포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한국어) 시험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변경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대학원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21학년도 총 2회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동 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외국어시험 및 한국어시험 시행 여부 (규정 제48조 제1항)	연 2회 시행 (학기별 1회)	폐지* *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제(대체)	2021학년도에는 정상 시행 (2022학년도부터 미시행)						
합격(면제) 기준 완화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규정 별표4)	계열 무관 TOEIC 800 이상	계열별 합격기준 신설(TOEIC) <table><tr><th>인문계열</th><th>자연계열</th><th>예체능계열</th></tr><tr><td>700점 이상</td><td>650점 이상</td><td>500점 이상</td></tr></table>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① 세부 내용은 붙임1 합격 (면제) 기준 참조 ② 신설 합격기준은 '21학년도 1학기부터 즉시 적용 ③ 일부 학과의 경우 계열별 합격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 * 규정 별표4 반드시 확인 ④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 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원소속 학과 전공 이수 + 융합전공 이수자 (규정 제48조 제1항)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간주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 합격 (면제)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붙임 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규정 발체본) 1부.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전문(2021. 2. 10. 공포) 1부. 끝.

부산대학교총장

직인생략

수신자 대학통합행정실전체, 대학원혁신실장, 언어교육원장, 국제협력실장

주무관

정문경

학적팀장

박진영

교육혁신과장

전결 2021.02.10.

강동산

협조자

시 행 교육혁신과-1881 (2021.02.10.) 접 수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 (2021.02.10.)
행정실-2336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 <https://www.pusan.ac.kr>

전화번호 051-510-1216 팩스번호

/ kyung@pusan.ac.kr

/ 공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대학, Leap forward, PNU!"